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7 지방세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7 지방세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7 지방세

총괄 | 정문종 조세분석심약관

기획·조정 | 김경신 세제분석과장

집필 | 심성택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하영 행정실무원
이은지 자료분석지원

「2017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assembly.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7 지방세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7. 5.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서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통일문제 등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건실한 재정운용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부터 조세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의 제도일반, 행정·정책, 통계 그리고 조세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지방주민의 공공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및 지방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논의를 고려하여 해외의 지방세목 사례와 과세체계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국제 주요세목 편에서는 2017년도 개정 세법령을 반영하여 주요 지표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경조정세 논의, EU의 부가가치세 실행계획 보고서, OECD 회원국의 BEPS 시행논의 등 해외 동향과 제도변화 추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개선 사항, 법인세 실효세율 개념 및 현황 등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이슈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세제관련 입법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조세정책연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Contents

I. 개요

1. 지방세의 의의	3
가. 지방세의 정의	3
나. 지방세 법률 체계	3
다. 지방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	4
2. 지방세의 특별원칙	5
가. 보편성의 원칙	5
나. 안정성의 원칙	5
다. 신장성의 원칙	5
라. 지역성의 원칙	5
마. 부담분임의 원칙	6
바. 응징성의 원칙	6
3. 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7
가. 지방세의 종류	7
나. 지방세의 분류	7
4. 지방재정 및 지방세	9
가. 개념	9
나. 지방재정의 수입구조	9
다. 지방세 징수 현황	10
라. 지방재정조정제도	11
5.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변천	13
가. 일제 시기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13
나. 해방 이후~195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14
다. 1960~197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14

라. 198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15
마. 199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16
바. 2000년대 이후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16

II. 과세체계 및 현황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21
가. 취득세	22
나. 지방소득세	27
다. 재산세	30
라. 자동차세	34
마. 지방소비세	36
바. 담배소비세	38
사. 등록면허세	40
아. 주민세	43
자. 레저세	45
차. 지방교육세	47
카. 지역자원시설세	48
2. 부과징수관계 및 권리구제	51
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51
나. 납세방법 및 납부기간·납부기한	52
다. 수정신고 등	53
라. 권리구제	55
3. 지방세 중과세 제도	57
가. 개요	57
나. 지방세 중과세	57
4.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	59
가. 개념	59
나. 법적 근거	59
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현황	60

Ⅲ. 국내외 현황 및 주요 논의 사항

1.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	65
가. OECD 국가의 조세 분류 체계	65
나. OECD 국가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67
다. OECD 국가의 지방세 조세부담률	69
라.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69
2.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제 현황	74
가. 미국	74
나. 독일	78
다. 프랑스	83
라. 일본	86
3. 우리나라의 지방세 관련 주요 논의 사항	92
가. 지방세 세수확충	92
나. 주요 세목별 논의 사항	100

표 목차

[표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목 분류	8
[표 2]	과세성격에 따른 지방세 세목 분류	8
[표 3]	일반재정 통합재정수입 현황: 2016년 최종예산 기준	9
[표 4]	교육재정 세입 현황: 2016년 최종예산 기준	10
[표 5]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11
[표 6]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12
[표 7]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의 유형	22
[표 8]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29
[표 9]	지방세 중과세 제도 현황	58
[표 10]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현황: 2011~2015년	60
[표 11]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2011~2015년	61
[표 12]	지방세 근거법률별·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2015년 기준	62
[표 13]	OECD 조세 분류	65
[표 14]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 세목	66
[표 15]	OECD 국가(연방형, 지역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67
[표 16]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68
[표 17]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조세 등 비율 현황: 2014년 기준	69
[표 18]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주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69
[표 19]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지방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70
[표 20]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71
[표 21]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72
[표 22]	미국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76
[표 23]	미국의 지방세 과세주체별·세원별 세수입 추이	76
[표 24]	미국의 특징적 세목 현황	77
[표 25]	독일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80
[표 26]	독일의 지방세 과세주체별·세원별 세수입 추이	81
[표 27]	독일의 특징적 세목 현황	82
[표 28]	프랑스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85
[표 29]	프랑스의 지방세 세원별 세수입 추이	85
[표 30]	프랑스의 특징적 세목 현황	86
[표 31]	일본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90
[표 32]	일본의 지방세 세원별 세수입 추이	90
[표 33]	일본의 특징적 세목 현황	91

[표 34]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관련 법률안 및 위원회 검토보고 내용	97
[표 35]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	103
[표 36]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및 부담금 변경 사항	103

I. 개요

1. 지방세의 의의	3
2. 지방세의 특별원칙	5
3. 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7
4. 지방재정 및 지방세	9
5.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변천	13

I. 개요

1. 지방세의 의의

가. 지방세의 정의

-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라고 정의¹⁾

나. 지방세 법률 체계

-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 등으로 나누어짐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지방세관계법에는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²⁾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세법: 지방세 11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세의 부과·징수, 지방세에 관한 특례 등 자치재정을 규정

다. 지방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³⁾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과세 자주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법률주의(과세권 국가귀속설)와 지방세조례주의(지방자치단체 과세고유권설)로 학설이 나뉨
 - 지방세법률주의는 지방세를 부과하려면 헌법 제59조⁴⁾에 의해 법률로 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나 집행과 관련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 지방세조례주의는 지방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국세는 헌법 제59조에 의하여,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헌법 제117조제1항⁵⁾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
-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등을 정할 수 없음
 -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3) 김태호, 「2016 지방세개론」, 세연T&A, 2016, pp.58~59.

4)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세의 특별원칙⁶⁾

- 국세, 지방세 등 조세부과의 일반원칙으로는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이 있음
-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목설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특성에 연유한 몇 가지 특별원칙이 있음
 -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신장성의 원칙, 지역성의 원칙, 부담분임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등

가. 보편성의 원칙

- 지방세의 세원은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세원의 지역 간 편중이 높은 세목은 국가 전체 재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세보다 국세에 적합

나. 안정성의 원칙

- 경기에 좌우되지 않고 매년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다. 신장성의 원칙

- 안정성과는 보완되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라. 지역성의 원칙

- 지방세의 세원이 지역에 정착되어 이동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6)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 2016, p.19.를 참고하여 작성.



- 지방세의 세원이 지역 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인하 경쟁 유발 가능

마. 부담분임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부담분임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방세 원칙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⁷⁾

바. 응익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대응하여 지역 구성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7) 김태호, 「2016 지방세개론」, 세연T&A, 2016, p.71.



3. 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가. 지방세의 종류⁸⁾

■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여 11개 세목으로 구성⁹⁾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레저세 등 9개 보통세 세목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개 목적세 세목으로 구성

나. 지방세의 분류

(1) 지방자치단체별 분류¹⁰⁾

■ 특별시·광역시·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

- 특별시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등 8개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개 목적세로 구성
 - 특별시 자치구세: 재산세(1/2)¹¹⁾, 등록면허세
- 광역시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레저세 등 7개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개 목적세로 구성
 - 광역시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¹²⁾
- 도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 4개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개 목적세로 구성
- 시·군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5개 보통세로 구성

8) 「지방세기본법」 제7조.

9) 보통세는 세수 용도의 특징이 없어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10) 「지방세기본법」 제8조.

11)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의 재산세는 특별시세와 특별시 자치구세에 1/2씩 포함.

12) 「지방세기본법」 제11조.



[표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목 분류

세목	특별시세	특별시 자치구세	광역시세	광역시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세	○	○		○	
	지방소득세	○	○			○
	재산세	△(1/2)	△(1/2)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	
	자동차세	○	○			○
	지방소비세	○	○		○	
	담배소비세	○	○			○
	등록면허세		○		○	
	주민세	○	△ (균등분)	△ (재산분· 종업원분)		○
목적세	레저세	○	○		○	
	지방교육세	○	○		○	
	지역자원시설세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과세성격에 따른 분류¹³⁾

■ 지방세는 과세성격에 따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보유과세, 거래과세), 기타로 구분

- 소득과세: 지방소득세
- 소비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행분
- 재산과세
 - 보유과세: 재산세, 자동차세 보유분,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 거래과세: 취득세
- 기타: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자원), 지방교육세

[표 2] 과세성격에 따른 지방세 세목 분류

구분	지방세 세목
소득과세	지방소득세
소비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행분
재산과세	보유과세: 재산세, 자동차세 보유분,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거래과세: 취득세
기타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자원), 지방교육세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 2016, p.23.



4. 지방재정 및 지방세

가. 개념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지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일반행정 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재정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분
 -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만 구성

나. 지방재정의 수입구조

- 일반재정 통합재정수입¹⁴⁾은 자체자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융자회수 등으로 구성
 - 2016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지방세(68.9조원)가 통합재정수입(182.2조원)의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국고보조금 24.8%(45.1조원), 지방교부세 20.5%(37.3조원), 세외수입 14.8%(27.1조원), 융자회수 등 2.1%(3.8조원)

[표 3] 일반재정 통합재정수입 현황: 2016년 최종예산 기준

(단위: 조원, %)

합계	자체자원			의존자원			융자회수 등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소계	
182,2(100.0)	68.9(37.8)	27.1(14.8)	96.0(52.7)	37.3(20.5)	45.1(24.8)	82.4(45.2)	3.8(2.1)

주: ()안은 비중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7.

14) 행정자치부는 2012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나, 2013년부터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 교육재정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성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채 수입, 학생납입금, 기타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
- 2016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42.9조원)이 교육재정(62조원)의 6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19.0%(11.8조원), 자체수입 10.6%(6.5조원), 국고보조금 1.1%(0.7조원)

[표 4] 교육재정 세입 현황: 2016년 최종예산 기준

(단위: 조원, %)

합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계	일반회계 전입금	
62.0(100.0)	42.9(69.2)	0.7(1.1)	43.6(70.3)	11.8(19.0)	6.6(10.6)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추경 기준이며, 정산으로 인해 최종 교부금 금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 p.29.

다. 지방세 징수 현황

■ 2015년 지방세 총징수액은 70조 9,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2,528억원 (15.0%) 증가

-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징수액이 20조 8,103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12조 7,844억원, 재산세 9조 2,937억원, 자동차세 7조 721억원 등의 순서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음

[표 5]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억원, %)

세목	2014년	2015	증감액	증감률
총 징수액	617,250	709,778	92,528	15.0
취득세	163,912	208,103	44,191	27.0
지방소득세	97,169	127,844	30,675	31.6
재산세	87,801	92,937	5,136	5.8
자동차세	69,201	70,721	1,520	2.2
지방소비세	58,357	60,027	1,670	2.9
지방교육세	54,549	58,149	3,600	6.6
담배소비세	29,528	30,350	822	2.8
등록면허세	14,851	18,313	3,462	23.3
주민세	13,885	15,015	1,130	8.1
지역자원시설세	11,379	13,514	2,135	18.8
레저세	10,729	10,889	160	1.5
과년도 수입	5,889	3,916	-1,973	-33.5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라. 지방재정조정제도¹⁵⁾¹⁶⁾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

- 중앙정부의 재원은 지방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전
 -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 교육재정에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

15)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형태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16)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발간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조세개요」(pp.67~76)를 참조.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계상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특별교부금 등 2가지로 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세 중 일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은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부되는 재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의 재원은 교육세 중 일부와 일반회계 전입금
 - 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만 지원하도록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표 6]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구분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재원		지방의 교육재정에 이전되는 재원	
	지방교부세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
근거 법률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법률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목적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과 재정불균형완화	특정사업 지원	교육의 균형발전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종류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보통·특별교부금	자치단체 교부금
재원	-보통·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9.24%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총액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	-내국세의 20.27% -교육세 중 일부	-교육세 중 일부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 성격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 -특별·소방안전교부세: 목적사업에 한정 용도지정	목적사업에 한정	-보통교부금: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용도지정	목적사업(유아보육료)에 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 p.112.



5.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변천¹⁷⁾

가. 일제 시기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 1906년 12월 공포된 「지방세규칙」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지방재정 관련 법규로 지방세의 종류를 시장세, 포구세, 여각세, 인력거세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 1909년 4월 새로 공포된 「지방비법」은 지방세의 종류를 지세부가세, 도장세(屠場稅), 시장세 등으로 규정
- 지방단체가 처음 창설된 1914년 이후부터 모든 지방세의 세율은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세율
 - 과표 결정과 함께 지방세의 가격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됨
- 1900년대 초반에는 지세 계열 지방세가 지방세제의 근간 역할을 하였으나, 1910년 이후 호세 계열(인세) 지방세가 대등한 비중을 차지
 - 1919년 호세 계열 지방세를 개편하면서 호세 가옥세를 도세로 이양
 - 지세 계열 및 호세 계열 지방세는 각각 오늘날의 재산세, 주민세로 평가
- 이후 지방세제는 1차, 2차 세제 개정을 거치면서 부가세 위주에서 독립 세제로서의 기능이 강화
- 1930년대 후반 3차 세제 개정으로 물세(物稅) 성격의 지방세가 확대되고, 국세 징수분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보급금제도'가 도입

17) 김재훈, 「기반형성기의 지방세제: 1961년~1976년」, 「2015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pp.175~185; 김현아,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한국세제사 제2판제3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p.19~27; 손희준, 「태동기(1948년~1960년) 지방세제의 특징과 의의」, 「2015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pp.153~164; 안종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2015. 등에서 발췌·정리.



나. 해방 이후~195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 1949년 12월 22일 전문(奎文) 5장 75조로 구성된 「지방세법」 공포
 - 인세(人稅)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세(物稅)계통을 중과
 - 지방세목의 개정과 폐지를 국세의 제·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것 이외 유보
 - 종래 특별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목적세 부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조치 강구
 - 보통세에는 부가세와 독립세 형태가 존재하고, 목적세에는 초등교육세와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목적세 인정
- 6.25전쟁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51년 도세인 특별행위세, 수렵세(狩獵稅), 동력세(動力稅), 선박세 등과 시·읍·면세인 금고세(金庫稅), 접객인세(接客人稅) 등을 신설
- 시·읍·면 재정 강화를 위해 1952년 시·읍·면세의 독립세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의 100분의 1000이상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하여 시·읍·면세의 부가세화 단행
- 전후 지방재정난이 심각함에 따라 1954년 국세 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시·읍·면세인 벌목세(伐木稅)를 신설하였으며, 토지소득세 환부금의 환부율을 인상
- 1958년 국세인 자동차세의 신설로 차량세가 폐지되면서 1959년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가세가 신설
- 1958년 「교육세법」을 제정하면서 교육재원 일원화를 위해 국세 교육세를 도입하였고, 이 교육세에 지방세교육세가 부과되면서 초등교육세가 폐지

다. 1960~197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 1961년 「지방세법」 폐지제정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시도
 - 국세인 영업세, 광산세, 물품세 일부와 지방세인 특별행위세, 어업세를 국세인 영업세로 통합하고, 국세인 통행세와 지방세인 교통세를 국세인 통행세로 통합

- 국세인 대지세, 광구세와 지방세인 가옥세, 임야세, 선세를 통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신설
- 국세인 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마권세를 지방세로 이양
-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국세인 소득세에 흡수
- 지방세인 광세부가세, 동력세 등이 폐지되고,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부가세를 시·도 및 시·군·구에 허용
- 국세부가세 제도로 인하여 중복과세, 세무행정상 혼란, 납세자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66년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시·도와 시·군의 국세부가세 폐지
 - 국세부가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영업세, 전기가스세 및 주세(탁주세, 약주세 등 제외) 중 각각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적용으로 변경
- 부족한 지방세수 확보, 사치성 소비·비생산자산 보유 억제, 대도시와 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필요에 따라 1973년 주민세 신설,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의 세율 조정 등 지방세 개편
 - 주민세 과세대상은 자치단체 내 개인 가구와 법인으로 하고, 과세구분은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 등에 따라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과 부산은 균등할과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의 500% 적용을 허용
 - 사치성 재산에 호화주택, 별장, 골프장, 외국산 고급승용차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하여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중과세

라. 198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 1984년 담배판매세를 신설한 이후 1987년 담배판매세 세율을 시 2%, 군 22%에서 시 22%, 군 55%로 대폭 인상
 - 담배판매세 도입은 농지세의 축소 개편에 따른 지방세원 감소분 보충 목적
- 1988년 특별시와 직할시의 세목을 특별시·직할시세와 자치구세로 분할하여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사업소세를 자치구세로 지정



- 1989년 담배판매세를 담배소비세로 확대 개편
 - 담배에 부과되던 국세인 부가가치세, 관세, 교육세, 방위세, 전매납부금 등이 모두 담배소비세로 통합
- 1989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종합토지세 도입
 - 종합토지세는 각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과세

마. 1990년대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 1991년 시·군세이던 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전환하고, 지역개발세를 도세로 신설
- 1997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세율 적용 가능 세목을 7개에서 10개로 확대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10개 세목
- 1999년 교통세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
 - 한미자동차 협상의 결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이의 보전을 위하여 도입
 - 2000년에 자동차세 세율을 추가 인하하였고,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

바. 2000년대 이후 지방세제의 주요변화

- 2001년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여 오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 지방교육세 수입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포함
- 2005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도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통합 평가하고,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



-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가 평가하는 공시가격을 적용
 - 보유세 부담 증가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으며, 복잡한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
 - 지방세기본법(제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지방세법(개정):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과세면제 및 경감
- 2011년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고, 유사세목과 중복과세를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통합하여 지방세 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개정(현재 세목)
 - 등록면허세: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합
 -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
 - 자동차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
 - 취득세: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통합
 -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통합
- 2013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 수입의 11%로 확대
 - 2011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자원 감소분 보전 등을 고려
- 2013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
- 2014년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의 10%를 표준세율로 하여 부과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
- 2014년 정액세로 부과하던 등록면허세를 인상



- 2015년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50%에서 43.9%로 인하
 - 궤련에 대한 세금을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57.1% 인상
- 2017년 지방세관계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확대 개편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채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Ⅱ. 과세체계 및 현황

-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21
- 2. 부과징수관계 및 권리구제 51
- 3. 지방세 종과세 제도 57
-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59

Ⅱ. 과세체계 및 현황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 지방세 세목별 과세개요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율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1.0~3.0% - 중과세율 4.4%, 8.0%, 8.4% 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0.6~4.0%
	양도소득		0.6~4.0%, 1.0~7.0%
	법인소득		1.0~2.2%
	특별징수		법인 · 소득세액의 10.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0.1~0.4% - 건축물 0.25% - 토지 종합: 0.2~0.5%, 별도: 0.2~0.4%, 분리: 0.07~4%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법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1cc당 18~200원(승합 자동차 등은 다름)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11%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종류별 다름)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0%), 설정(0.2%), 기타(10,000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0.4%), 자본증가(0.4%) - 비영리법인: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8,000원 ~ 67,500원
주민세	균등분	개인·법인	개인(4,800원), 법인(5~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종업원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1억 3,500만원 초과)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각각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43.99%
지역지원 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200원

주: 세목은 보통세, 목적세 순, 징수액이 큰 순서임.

자료: 서울특별시, 「2017 알기쉬운 지방세」, 2017, p.19.



가. 취득세

(1) 개요

■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¹⁸⁾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간주¹⁹⁾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으로 간주(법인설립 시 제외)²⁰⁾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 성격²¹⁾

[표 7]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의 유형

취득	원시취득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증축
		선박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출원
		민법 상 시효취득	-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간주취득 (의제취득)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자료: 박광현, 「지방세 이해와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p.533.

18) 「지방세법」 제6조제1호.

19) 「지방세법」 제7조제4항.

20) 「지방세법」 제7조제5항.

21) 대법원 92누16842(1993.9.28.).



(2)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간주취득자 포함)
 -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취득자
 -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

(3)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간주취득 포함)

(4)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함(단, 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증여·기부 또는 무상취득 등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함
 - 사실상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취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간주취득의 경우 증가한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가액 원칙, 예외적 시가표준액 적용
 -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법인의 총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의 주식 수를 곱한 금액



(5) 서울

■ 표준세율

- 부동산 취득
 - 상속: 농지 2.3%, 농지 이외 2.8%
 - 상속 외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 2.8%
 -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합유물 및 공유물의 분할 취득: 2.3%
 - 주택 유상거래: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 9억원 초과 3.0%
 - 그 밖의 원인: 농지 3.0%, 농지 이외 4.0%(부동산 유상거래 4.0%)
- 부동산 외 취득
 -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0%
 - 소형선박: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경차 4.0%),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5.0%(경차 4.0%), 영업용 4.0%, 그 외 차량 2.0%
 - 기계장비 3.0%(등록대상 아닌 기계장비 2.0%)
 - 항공기 2.0%, 입목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2.0%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2.0% 등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중과세

- (A)과밀억제권역²²⁾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²³⁾×2)
 -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B)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22)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 인천,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수도권장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

23)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지방세법」제6조제19호).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

- (C)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
- (A), (B)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
- (B), (C)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

■ 세율 적용 특례

-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되고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환매, 상속, 합병, 건축물 이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취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을 적용
 - 대도시 중과법인의 경우 산출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
-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되었던 개수, 구조변경, 과점주주 취득, 건설기계·차량 리스, 지입차량·기계장비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2%)만 적용
 - 과세대상이 본점·주사무소, 공장 신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3배(6%)를 적용하고,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5배(10%)를 적용

■ 세율 적용방법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을 공제하여 적용
-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
-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6%의 세율을 적용(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6) 비과세 등

■ 비과세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 「지방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단,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량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7) 부과징수 절차

■ 납세지

- 부동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소재지
-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물건의 소재지
-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안분

■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나. 지방소득세

(1) 개요

-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어오던 것이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2)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²⁴⁾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

(3)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그 범위는 종합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내·외국법인의 소득으로 그 범위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4)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청산소득금액: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미환류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 표준세율: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0분의 10
 - 2013년까지는 소득세 · 법인세액의 10%였으나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 개인지방소득 세액계산의 특례
 -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a), b) 중 큰 금액,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금액
 - a)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더한 금액
 - b)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
 - 이 외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과세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음
- 특별징수: 거주자·내국법인으로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특별징수분은 제외)

[표 8]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거주자의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법인지방소득세 (내국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5) 부과징수 절차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소득,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
 - 복권 등의 당첨금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등의 판매지
 -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 신고납부(원칙)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다. 재산세

(1) 개요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2010년에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구)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

(2) 납세의무자

- 원칙적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登記·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 예외적 납세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등

(3)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를 조성하였으나 지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토지라면 과세대상
- 건축물: 건축법²⁵⁾ 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승강기,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부수시설물은 별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²⁶⁾
 -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이 주택²⁷⁾

2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6) 「주택법」 제2조제1호.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표준세율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0.2%~0.5%
 - 별도합산과세대상: 0.2%~0.4%
 -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 부속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0.5%
 - 그 밖의 건축물: 0.25%
 - 주택: 별장 4%, 그 밖의 주택 0.1%~0.4%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하여 세율 적용
 - 주택 중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 위락용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과세
 - 선박: (고급) 5%, (일반) 0.3%
 - 항공기: 0.3%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에만 적용)

27)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제1호.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 조례로 추가과세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토지는 관내합산하여 세율적용)
 - 조례로 0.2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세 부담 상한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 이상 과세할 수 없음
 -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 105%, 3억원~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기준)
 - 주택 이외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
 -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은 각각 계산

■ 종과세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0.25%)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 중과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등

■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도시지역분 합산)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5) 부과징수 절차

■ 납세지

- 토지, 건축, 주택: 소재지
- 선박: 선적항의 소재지
-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납부기한
 -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매년 7월 16일~7월 31일(50%), 9월 16일~9월 30일(50%)
- 납부방법: 보통징수(납부고지서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 필요)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의 분할납부 가능

라. 자동차세

(1) 개요

- 자동차의 소유와 자동차의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짐

(2)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자동차 주행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과세대상

-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자동차 주행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및 용도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

- 표준세율

- 자동차 소유분
 - 승용 자동차

영업용(cc당 세액)		비영업용(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 승합 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조례에 따라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50%까지 가산가능
- 자동차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대통령령에 따라 표준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현재 조정세율: 26%
-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5) 부과징수 절차

■ 자동차 소유분

- 납세지: 자동차 소재지
- 납부기한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2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 12월분

■ 자동차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를 다음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마. 지방소비세

(1) 개요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신설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2)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사업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납세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에게 지방소비세를 납부하는데 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함



(3)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²⁸⁾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세액+공제세액)+가산세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 세율: 과세표준의 11%

- 세율은 2013까지 5%였으나, 2014년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6%p인상

(5) 납입 및 배분 절차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납입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 납입관리자는 지역별 소비지출,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
 -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납입된 지방소비세의 11분의 5)

28) 김태호, 「2016 지방세개론」, 세연T&A, 2016, p.455.



해당 도의 안분액=지방소비세 과세표준 × 5% × 해당도의 소비지수 ×
가중치 / 각 도의 소비지수에 가중치 곱한 값의 전국합계액

- 소비지수: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 가중치: 지역별 격차 해소 위해 적용, 수도권(100), 광역시(200), 도(300)

- 취득세를 인하 등을 고려한 안분(납입된 지방소비세의 11분의 6)

해당 도의 안분액 = $\{ [A - (A \times B) - (A \times C)] - D \} \times E$

- A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 - (A \times B) - (A \times C)] \div 11 \}$
- E :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바. 담배소비세

(1) 개요

- 1989년 방위세, 교육세, 담배판매세 등을 폐지하면서 담배소비세로 일원화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등에 부과하는 세금

(2)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3) 과세대상

- 담배(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머금은 담배)
 - 제조업자: 제조장 반출시
 - 수입판매업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 표준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쥘런: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 제3종 엽쥘런: 1g당 103원
 - 제4종 각런: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연초 고형물 1g당 88원
 -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 대통령령에 따라 표준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과세면제

- 수출,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주한외국군인 등에 대한 판매, 보세구역 판매,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에 판매,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등
-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쥘런 200개비, 엽쥘런 50개비는 과세면제

(5) 부과징수 절차

■ 신고납부

- 제조자는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안분기준²⁹⁾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
-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 의무자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

29)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참조.



사. 등록면허세

(1) 개요

- 등록면허세는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폐합하여 2011년에 신설된 지방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세금

(2)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 받는 자 포함)

(3) 과세대상

- 등록: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취득과 관련한 등록 제외)
- 면허: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



(4) 과세표준 및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 $\max(\text{신고가액}, \text{시가표준액})$
- 표준세율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 0.8%
 - 소유권 이전: 유상 2.0% 무상 1.5%, 상속 0.8%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및 가등가: 0.2%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선박 등기 또는 등록)
 - 소유권 보존: 0.02%(그 외 건당 15,000원)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0.2%
 - (차량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 5.0%(경차 2.0%)
 - 그 외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3.0%, 영업용, 경차 2.0%
 - 저당권 설정등록: 0.2%(그 외 건당 15,000원)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1.0%
 - 저당권 설정등록: 0.2%(그 외 건당 10,000원)
 -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 0.4%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 0.2%
 -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0.1%
-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 중과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표준세율

과세대상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5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등

(5) 부과징수 절차

■ 납세지

-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소재지
- 차량, 기계장치: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등록지
- 상호, 영업허가: 영업소 소재지

■ 납부기한 및 방법

- 등록: 등기·등록하기 전 신고납부
- 면허: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아. 주민세

(1) 개요

- 2010년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세 재산분을 주민세로 통합하고, 2014년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을 종업원분 주민세로 전환
-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2) 납세의무자

- 균등분
 - 개인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재산분: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3) 과세대상

- 균등분: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
-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표로 부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을 과표로 부과



(4) 과세표준과 세율

■ 균등분 표준세율

- 개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20만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10만원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기타 법인	5만원

- 주민세 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병기고지)

-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재산분 세율

- 표준세율: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250원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0원 이하로 조정 가능
-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500원(표준세율 × 2)
- 면세: 사업소 연면적 330m² 이하인 경우

■ 종업원분 표준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270만원 × 50) 이하인 경우 면세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 기초생활수급자의 균등분 등

(5) 부과징수 절차

■ 균등분

- 납세지: 주소지, 사업장소재지
-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과세기준일 8월 1일, 납기는 8월 16일~8월 31일, 보통징수(고지납부)
- 징수는 보통징수(고지납부)

■ 재산분, 종업원분

- 납세지: 사업소 소재지
-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재산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는 7월 1일~7월 31일, 신고납부
 - 종업원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 레저세

(1) 개요

- 레저세는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

(2) 납세의무자³⁰⁾

- 경륜 및 경정 사업자, 한국마사회, 소싸움경기 시행자

30)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 과세대상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세율: 과세표준의 10%

(5) 부과징수 절차

■ 납세지

- 과세대상사업장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

■ 안분기준³¹⁾

- 경마, 경륜, 경정 등의 본경기장에서 직접 발매한 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본경기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배부
- 장외발매소 발매 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본경기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50%씩 배부하며, 경기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경기장 관할 지자체에 80%를, 장외발매소 관할 지자체에 20%를 배부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차. 지방교육세

(1) 개요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2011년 신설

(2) 납세의무자

- 취득세(차량취득세 제외), 등록면허세(자동차 등록면허세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 등의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과세대상과 동일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0.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
 -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25%)
 -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레저세액 제외)



(5) 부과징수 절차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
- 부과징수: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

카. 지역자원시설세

(1) 개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2)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을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3) 과세대상

-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온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4)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10m³ 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m³ 당 200원, 목욕용수용 온천수 1m³ 당 100원, 기타 지하수 1m³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1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1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1kwh당 0.3원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원자력·화력발전 제외)

■ 특정부동산

- 건축물 또는 선박: 건축물·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은 0.04~0.12%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0.023%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중과세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화재 위험 건축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중과



■ 비과세

- 특정자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 자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 특정부동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5) 부과징수 절차

■ 납세지

- 특정자원: 발전소, 채수공,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 등의 소재지
- 특정부동산: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의 소재지

■ 납부방법

- 특정자원: 신고납부
 - 다만, 지하수의 경우 조례에 따라 보통징수 가능
- 특정부동산: 재산세 규정 준용 부과징수



2. 부과징수관계 및 권리구제

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주민세
 -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하는 때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납세의무의 소멸

-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나. 납세방법 및 납부기간·납부기한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보통징수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개인지방소득: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정기분 - 7월(16~31):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1):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고지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제1기분(6.16~30)/ 제2기분(12.16~31) •수시분: 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 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11%)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록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면허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균등분: 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레저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담배소비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신고납부까지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말일까지 납부(기준 지역개발세분: 지하수는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매년 7월(16~31), 9월(16~30): 기준 공동시설세분

주: 세목은 보통세, 목적세 순, 징수액이 큰 순서임.

자료: 서울특별시, 「2017 알기쉬운 지방세」, 2017, p.17.

다. 수정신고 등

-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신고서제출 이후 신고서를 수정·경정 하거나, 법정기한 후에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제도가 마련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 가능
- 요건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
 - 6월 이내 수정신고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청구 가능
- 요건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기한후신고서) 제출 가능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 납부 필요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필요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라. 권리구제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 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청구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청구 가능
 -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 30일의 범위에서 1회 한정으로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광역시세·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
 -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 송달
-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
-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지방세 종과세 제도

가. 개요

- 종과세 제도는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특정 행위를 억제시키거나 위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³²⁾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등 5가지 세목에 종과세 규정이 있음

나. 지방세 종과세

■ 취득세

- (A)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종과기준세율×2)
 -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B)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3-(종과기준세율 × 2)
- (C)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종과기준세율×4)
- (A), (B)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
- (B), (C)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종과기준세율 × 2)

■ 재산세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0.25%)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 종과

32) 유태현, 「지방세 종과세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지방세포럼 통권 제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11, p.5.



■ 주민세(재산분)

-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500원(표준세율 × 2)

■ 등록면허세(등록분)

- 표준세율의 3배 중과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화재위험 건축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중과

[표 9] 지방세 중과세 제도 현황

구분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과밀 억제 권역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중과기 준세율×2)	-	-	-	-
	법인설립 등	표준세율×3- (중과기준세율×2)	-	-	표준세율 ×3	-
	공장 신·증설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표준세율× 5(5년간)	-	-	-
사치성재산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4)	-	-	-	-
위험 건축물	화재위험	-	-	-	-	표준세율×2
	대형화재 위험	-	-	-	-	표준세율×3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	표준세율 ×2	-	-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가. 개념

-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감면이란 납세의무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

나. 법적 근거

- 지방세 비과세, 과세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
- 지방세 감면 및 특례와 관련한 사항은 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³³⁾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 가능
 -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함
 - 지방세 특례³⁴⁾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대하여 종합적 고려 필요
 -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은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특례제도가 없음³⁵⁾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소납부제도: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을 적용

33)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이다.

34)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 포함)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35) 홍기용, 「지방세법」, 삼일인포마인, 2016, p.705.



- 예외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 가능
-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³⁶⁾
 -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연도별 한도를 규정
 - 2017년까지: 15%, 2018년: (15%+0.5%), 2019년: (15.25%+0.5%)
 - 2020년 이후: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0.5%

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2011년~201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비과세·감면액은 감소하는 추세
 - 비과세·감면율은 2011년 24.9%에서 2015년 15.5%로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 비과세·감면 권고 비율인 15%에 근접

[표 10]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현황: 2011~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징수액	523,001	539,381	537,789	617,250	709,778
비과세·감면액	173,319	154,286	160,760	130,029	130,123
비과세·감면율	24.9	22.2	23.0	17.4	15.5

주: 비과세·감면율=비과세·감면액/(징수액+비과세·감면액)×100.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36)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 2011년~2015년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의 순
 - 취득세의 비과세·감면액 비중은 하락추세
 -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비과세·감면액 비중은 증가추세
- 2015년 기준 취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4가지 세목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94.8%를 차지

[표 11]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 감면액 현황: 2011~2015년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73,319(100)	154,286(100)	160,760(100)	130,029(100)	130,123(100)
취득세	106,371(61.4)	84,518(54.8)	93,003(57.9)	56,942(43.8)	53,054(40.8)
재산세	42,746(24.7)	45,313(29.4)	47,080(29.3)	48,198(37.1)	48,417(37.2)
담배소비세	13,380(7.7)	13,704(8.9)	9,894(6.2)	12,231(9.4)	16,642(12.8)
자동차세	6,534(3.8)	6,499(4.2)	6,624(4.1)	6,779(5.2)	5,260(4.0)
등록면허세	1,106(0.6)	1,141(0.7)	843(0.5)	2,487(1.9)	3,524(2.7)
주민세	451(0.3)	408(0.3)	438(0.3)	1,993(1.5)	1,862(1.4)
지역자원 시설세	992(0.6)	1,074(0.7)	1,107(0.7)	1,218(0.9)	1,234(0.9)
레저세	55(0.0)	58(0.0)	123(0.1)	109(0.1)	121(0.1)
지방교육세	3(0.0)	-	-	7(0.0)	2(0.0)
지방소득세	1,607(0.9)	1,569(1.0)	1,648(1.0)	66(0.1)	7(0.0)
도시계획세	74(0.0)	2(0.0)	-	-	-

주: ()안은 비중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 지방세 근거법률별 비과세·감면 현황

- 법률별로 201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6조 8,256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5조 5,605억원), 조세특례제한법(4,528억원), 감면조례(1,452억원), 기타(282억원) 순
 -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재산세가 3조 6,617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담배소비세(1조 6,642억원), 취득세(1조 2,536억원), 주민세



- (1,004억원) 등의 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취득세가 3조 7,651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산세(1조 1,405억원), 등록면허세(3,429억원), 자동차세(1,738억원) 등의 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자동차세가 2,734억원으로 가장 크고,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취득세가 1,045억원으로 가장 큰

[표 12] 지방세 근거법률별·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계	130,123	68,256	55,605	1,452	4,528	282
취득세	53,054	12,536	37,651	1,045	1,553	270
재산세	48,417	36,617	11,405	165	231	0
담배소비세	16,642	16,642	-	-	-	-
자동차세	5,260	685	1,738	102	2,734	0
등록면허세	3,524	78	3,429	15	2	-
주민세	1,862	1,004	845	1	-	12
지역자원시설세	1,234	696	537	0.4	0.4	-
레저세	121	-	-	121	-	-
지방교육세	2	-	-	1	1	-
지방소득세	7	-	0	0	6	0
도시계획세	0	-	-	0	-	0

주: ()안은 비중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Ⅲ. 국내외 현황 및 주요 논의 사항

- 1.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 65
- 2.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제 현황 74
- 3. 우리나라 지방세 관련 주요 논의 사항 92

Ⅲ. 국내외 현황 및 주요 논의 사항

1.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

가. OECD 국가의 조세 분류 체계

- OECD는 조세를 세원별로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기타에는 사회보장기여금 및 급여과세 등을 포함

[표 13] OECD 조세 분류

분류	세분류
소득과세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1200 Corporate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1300 Unallocable between 1100 and 1200
재산과세 (4000 Taxes on property)	4100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4500 Non-recurrent taxes 4600 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소비과세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leasing and delivery of goods and rendering of services 5200 Taxes on use of goods, or on permission to use goods or perform activities 5300 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기타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6000 other taxes

자료: 허능식·임상수·이선영,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p.35.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 세목구성은 우리나라와 전반적으로 유사
 - 주요한 차이점은 미국, 독일 등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나, 프랑스, 일본, 한국 등에서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지 않음

[표 14]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 세목

세 목	연방형		단일형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	○	○	○	○
1100 of individuals	○	○	○	○	○
1110 On income and profits	-	○	○	○	○
1120 On capital gains	-	-	-	-	-
1200 Corporate	○	○	○	○	○
1110 On income and profits	-	○	○	○	○
1120 On capital gains	-	-	-	-	-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	-	-	-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	-	○	-	○
4000 Taxes on property	○	○	○	○	○
4100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	○	○	○	○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	-	-	-	-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	○	-	-	-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	○	○	○	○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	○	○	○	○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	○	○	○	○
5110 General taxes	○	○	-	○	○
5120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	○	○	○	○
5200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	○	○	○	○
5210 Recurrent taxes	○	○	○	○	○
5220 Non-recurrent taxes	○	-	○	-	-
6000 Other taxes	-	○	○	○	○

자료: 하능식·임상수·이선영,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pp.38~39.



나. OECD 국가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 OECD 국가는 국가형태에 따라 연방형, 지역형, 단일형 등으로 구분 가능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위스, 미국 등은 연방형 국가이고, 스페인은 지역형 국가
 - 그 외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단일형 국가
-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수입의 정부 단계별 비중을 살펴보면, 연방형 국가의 2014년 기준 과세주체별 비중 평균은 연방정부 53.4%, 주정부 16.7%, 지방정부 7.6% 등임
 - 1975~2014년간 조세별 비중 추이를 보면, 연방정부 조세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 조세 비중은 감소

[표 15] OECD 국가(연방형, 지역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단위: %)

국가명	연방정부(국세)			주정부(지방세)			기초정부(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호주	80.1	77.5	80.0	15.7	19.0	16.5	4.2	3.4	3.5	0.0	0.0	0.0
오스트리아	51.7	64.8	66.5	10.6	1.8	1.6	12.4	4.1	3.2	25.3	29.3	28.5
벨기에	65.3	60.1	57.4	-	1.8	5.3	4.4	4.8	4.6	28.8	32.2	31.9
캐나다	47.6	39.1	41.4	32.5	37.1	39.1	9.9	9.8	10.3	10.0	14.0	9.2
독일	33.5	31.4	31.2	22.3	21.6	22.0	9.0	7.4	8.2	34.0	39.0	38.1
멕시코	-	73.9	73.3	-	2.8	4.4	-	1.5	1.6	-	21.8	20.6
스위스	30.7	31.6	35.2	27.0	23.8	24.7	20.3	17.6	15.3	22.0	27.0	24.9
미국	45.4	41.4	42.1	19.5	20.0	19.7	14.7	13.3	14.1	20.5	25.2	24.1
연방형 평균	50.6	52.5	53.4	21.3	16.0	16.7	10.7	7.7	7.6	20.1	23.6	22.2
스페인(지역형)	48.2	50.4	42.3	-	4.8	13.6	4.3	8.5	10.0	47.5	35.8	33.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일형 국가의 2014년 기준 과세주체별 비중 평균은 중앙정부 63.5%, 지방정부 11.7%등임
 - 1975~2014년간 조세별 비중 추이를 보면, 중앙정부 조세와 지방정부 등의 비중은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조세는 1975년 89.0%에서 2014년 56.2%로 크게 감소하였고, 지방정부 조세는 1975년 10.1%에서 2014년 16.9%로 소폭 증가

[표 16]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과세주체별 비중 현황 (단위: %)

국가명	중앙정부(국세)			지방정부(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칠레	-	89.9	86.7	-	6.5	7.6	-	3.6	5.8
체코	-	57.7	54.5	-	0.9	1.2	-	41.4	43.8
덴마크	68.9	68.2	74.6	30.0	31.3	25.0	0.1	0.0	0.1
에스토니아	-	84.3	82.0	-	0.8	1.1	-	14.9	16.5
핀란드	56.0	46.6	47.4	23.5	22.3	23.5	20.4	30.8	28.9
프랑스	51.2	42.3	33.1	7.6	11.0	13.0	40.6	46.3	53.7
그리스	67.1	66.8	68.6	3.4	0.9	3.0	29.5	31.7	28.2
헝가리	-	63.8	60.8	-	2.5	5.7	-	33.6	33.2
아이슬란드	81.3	79.2	75.5	18.7	20.8	24.5	0.0	0.0	0.0
아일랜드	77.4	83.1	82.4	7.3	2.7	2.8	13.1	12.7	14.3
이스라엘	-	79.7	75.6	-	6.4	8.0	-	13.9	16.4
이탈리아	53.2	62.7	53.4	0.9	5.4	16.5	45.9	31.5	29.8
일본	45.4	41.2	36.9	25.6	25.3	23.5	29.0	33.5	39.7
한국	89.0	69.2	56.2	10.1	18.7	16.9	0.9	12.1	26.9
라트비아	-	43.5	50.8	-	19.5	19.5	-	36.9	29.1
룩셈부르크	63.6	66.5	68.8	6.7	6.5	3.3	29.0	26.6	27.8
네덜란드	58.9	56.0	55.6	1.2	3.1	3.8	38.4	39.5	39.6
뉴질랜드	92.3	94.7	93.3	7.7	5.3	6.7	0.0	0.0	0.0
노르웨이	50.6	58.4	86.1	22.4	19.6	13.9	27.0	22.0	0.0
폴란드	-	61.9	48.2	-	8.3	13.4	-	29.8	38.1
포르투갈	65.4	72.3	67.8	0.0	5.4	7.2	34.6	21.5	24.7
슬로바키아	-	62.5	54.6	-	1.3	2.7	-	36.2	42.1
슬로베니아	-	51.8	50.0	-	6.3	10.6	-	41.9	39.0
스웨덴	51.3	46.9	50.0	29.2	30.9	36.9	19.5	21.8	12.7
터키	-	75.1	62.0	-	12.8	9.4	-	12.1	28.5
영국	70.5	77.5	75.8	11.1	3.7	5.0	17.5	17.8	18.7
평균	65.1	65.5	63.5	12.8	10.7	11.7	21.6	23.5	24.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다. OECD 국가의 지방세 조세부담률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DP 대비 지방세 비중(지방세 조세부담률)은 각각 8.8%, 10.9%, 6.0%, 7.5%로 우리나라(4.3%) 보다 높음
- 국제,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 부담액의 GDP 대비 비율(국민부담률)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우리나라 보다 높음

[표 17]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조세 등 비율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국민부담률					
	국제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합계
		주세(state)	지방세(local)	합계		
미국	10.9	5.1	3.7	8.8	6.2	25.9
독일	11.5	8.0	2.9	10.9	14.2	36.6
프랑스	15.0	—	6.0	6.0	24.5	45.5
일본	11.8	—	7.5	7.5	12.7	32.0
한국	13.8	—	4.3	4.3	6.5	24.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16)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 2014년 기준 연방형 국가의 주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평균은 소득과세 33.6%, 재산과세 19.8%, 소비과세 29.1%, 기타과세 17.5% 등으로 소득과세 비중이 가장 크고,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과세 순
- 호주, 벨기에, 멕시코 등은 주정부의 소득과세가 없음

[표 18]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주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호주	0.0	40.0	29.8	30.2
오스트리아	46.3	2.0	15.8	35.9
벨기에	0.0	72.3	27.1	0.6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캐나다	48.1	4.4	36.6	10.9
독일	53.9	6.3	39.7	0.1
멕시코	0.0	16.8	20.9	62.3
스위스	78.6	14.4	6.5	0.5
미국	41.7	2.1	56.1	0.1
연방형 평균	33.6	19.8	29.1	17.5
스페인(지역형)	67.4	19.9	11.7	1.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2014년 기준 연방형 국가의 기초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평균은 소득과세 24.9%, 재산과세 57.0%, 소비과세 6.5%, 기타과세 11.6% 등으로 재산과세 비중이 가장 크고, 소득과세, 기타과세, 소비과세 순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등은 기초정부의 소득과세가 없음
 -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은 기초정부의 기타과세가 미미하거나 없음

[표 19] OECD 국가(연방형 국가)의 기초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호주	0.0	100.0	0.0	0.0
오스트리아	0.0	14.6	9.6	75.8
벨기에	30.9	60.6	8.2	0.3
캐나다	0.0	97.2	1.7	1.1
독일	79.4	14.5	6.0	0.1
멕시코	0.0	83.5	3.0	13.5
스위스	82.8	14.7	0.4	2.1
미국	6.1	70.7	23.2	0.0
연방형 평균	24.9	57.0	6.5	11.6
스페인(지역형)	17.9	42.9	34.2	5.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2014년 기준 단일형 국가의 지방정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평균은 소득과세 34.7%, 재산과세 42.3%, 소비과세 18.3%, 기타과세 4.7% 등으로 재산과세 비중이 가장 크고, 소득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순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세 16.0%, 재산과세 45.3%, 소비과세 27.2%, 기타과세 11.5% 등으로 재산과세 비중이 가장 크고, 소비과세, 소득과세, 기타과세 순임
 - OECD 단일형 국가들은 소득과세의 비중이 소비과세 보다 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과세 비중이 더 큼

[표 20] OECD 국가(단일형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칠레	0.0	41.3	58.6	0.1
체코	0.0	55.0	45.0	0.0
덴마크	88.7	11.3	0.0	0.0
에스토니아	0.0	85.1	14.9	0.0
핀란드	92.8	7.1	0.0	0.1
프랑스	0.0	51.8	23.6	24.6
그리스	0.0	93.6	6.5	0.0
헝가리	0.0	19.5	80.5	0.0
아이슬란드	82.3	17.0	0.8	0.0
아일랜드	0.0	91.5	0.0	8.5
이스라엘	0.0	95.0	5.0	0.0
이탈리아	24.7	20.2	20.1	35.0
일본	51.5	28.2	19.2	1.1
한국	16.0	45.3	27.2	11.5
라트비아	84.3	14.4	1.3	0.0
룩셈부르크	89.1	9.1	1.5	0.3
네덜란드	0.0	51.8	48.2	0.0
뉴질랜드	0.0	90.3	9.6	0.1
노르웨이	87.5	11.2	1.3	0.0
폴란드	56.7	32.4	5.3	5.6
포르투갈	27.1	45.2	26.0	1.7
슬로바키아	0.0	51.3	25.5	23.2
슬로베니아	77.9	15.8	6.4	0.0
스웨덴	97.5	2.5	0.0	0.0
터키	26.0	14.8	50.2	9.0



(단위: %)

국가명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영국	0.0	100.0	0.0	0.0
단일형 평균	34.7	42.3	18.3	4.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OECD 국가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 세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지방세 세원별 비중 평균은 소득과세 33.8%, 재산과세 39.2%, 소비과세 20.2%, 기타과세 6.8% 등으로 재산과세 비중이 가장 크고, 소득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순
- 우리나라는 소득과세 16.0%, 재산과세 45.3%, 소비과세 27.2%, 기타과세 11.5% 등으로 소득과세의 경우 OECD 국가 평균보다 비중이 낮고,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등은 비중이 높음

[표 21]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비중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미국	26.8	30.8	42.4	0.0
영국	0.0	100.0	0.0	0.0
터키	26.0	14.8	50.2	9.0
스위스	80.2	14.5	4.2	1.1
스웨덴	97.5	2.5	0.0	0.0
스페인	46.4	29.6	21.3	2.7
슬로베니아	77.9	15.8	6.3	0.0
슬로바키아	0.0	51.3	48.7	0.0
포르투갈	27.1	45.2	26.0	1.7
폴란드	56.7	32.4	5.3	5.6
노르웨이	87.5	11.2	1.3	0.0
뉴질랜드	0.0	90.3	9.7	0.0
네덜란드	0.0	51.8	48.2	0.0
멕시코	0.0	34.9	16.0	49.1
룩셈부르크	89.1	9.1	1.5	0.3
라트비아	84.3	14.4	1.3	0.0
한국	16.0	45.3	27.2	11.5
일본	51.5	28.2	19.2	1.1
이탈리아	24.7	20.2	29.0	26.1



(단위: %)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이스라엘	0.0	95.0	5.0	0.0
아일랜드	0.0	91.5	0.0	8.5
아이슬란드	82.3	17.0	0.8	0.0
헝가리	0.0	19.5	80.5	0.0
그리스	0.0	93.6	6.4	0.0
독일	60.9	8.5	30.6	0.0
프랑스	0.0	51.8	23.5	24.7
핀란드	92.8	7.1	0.0	0.1
에스토니아	0.0	85.1	14.9	0.0
덴마크	88.7	11.3	0.0	0.0
체코	0.0	55.0	45.0	0.0
칠레	0.0	41.3	58.7	0.0
캐나다	38.1	23.8	29.3	8.8
벨기에	14.4	66.9	18.3	0.4
오스트리아	15.4	10.4	11.6	62.6
호주	0.0	50.6	24.5	24.9
OECD 평균	33.8	39.2	20.2	6.8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2.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제 현황

가. 미국

(1) 지방세 체계³⁷⁾

- 미국의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연방세, 지방세(주세 포함)로 구분하고, 세원에 따라 소득·재산·소비과세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지방세는 주정부 세법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주마다 세목, 과세물건, 세율 등이 상이
 - 세목의 명칭이 다양하나, 보통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영업허가세, 판매세 및 사용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실업보험세 등이 있음
- 소득과세
 - 주정부 소득세
 - 대부분 연방정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합산신고 여부, 소득공제항목 등은 주마다 다름
 - 통상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주마다 세율이 다름
 - 일부주는 최저한세 채택
 - 지방정부 소득세
 - 모든 주에서 소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소득세, 임금세, 급여세, 지방서비스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 일반적으로 관할권내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자에게 적용
 - 부가세방식, 독립세방식 등 다양하게 운영
- 재산과세
 - 모든 지방정부에서 재산세를 과세하나, 주정부의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 존재
 -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수입으로 주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과세
 - 일반재산세와 개별재산세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재산세의 경우 과세재산의 범위가 주마다 다를 수 있고, 개별재산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대표적

37) 박훈, 「미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발췌·정리.

-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주택, 상가 등의 포함여부, 동산 중 과세대상 포함여부 등이 주마다 다름
-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등도 지방정부별 다양
 -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
-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음
- 연방소득세 계산시 지방정부 재산세의 소득공제 가능

■ 소비과세

-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 등 5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일반소비세를 과세
 - 주정부 일반소비세와 지방정부 일반소비세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음
 - 연방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만 있고, 일반소비세는 없음
 -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 형태가 아닌 판매세 형태
 - 일반소비세에 포함되는 세목이 주마다 다양
 - 일반소비세의 세율은 지방정부별로 다르므로 상품가격이 지역별로 상이
- 일반소비세는 판매세와 사용세로 구별 가능
 - 판매세: 원칙적으로 주내에서 매매가 있는 경우에 과세
 - 사용세: 주외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물건이 주내에서 사용, 저장, 소비 되는 경우에 과세
- 개별소비세로는 유류세, 주류세, 담배세 등이 있음
 - 유류세: 일반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모든 주에서 과세되고, 세율은 주마다 다름
 - 주류세: 증류주, 과실주, 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마다 세율이 다름. 일부 주의 경우 일부 주류에 대해 전매제로 운영
 - 담배세: 담배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마다 세율이 다양. 모든 주에서 과세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일부가 과세
-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을 보면, 연방정부는 45.4%에서 42.1%, 지방정부는 14.7%에서 14.1%로 감소한 반면, 주정부는 19.5%에서 19.7%로 증가



[표 22] 미국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단위: %)

	연방정부			주정부(state)			기초정부(local)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미국	45.4	41.4	42.1	19.5	20.0	19.7	14.7	13.3	14.1	20.5	25.2	24.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주정부의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과세는 38.8%에서 41.7%로 증가한 반면, 재산과세는 3.6%에서 2.1%로, 소비과세는 57.7%에서 56.2%로 감소
 - 소비과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득과세, 재산과세 순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정부의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과세는 5.8%에서 6.1%로, 소비과세는 21.3%에서 23.2%로 증가한 반면, 재산과세는 72.9%에서 70.7%로 감소
 - 재산과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비과세, 소득과세 순

[표 23] 미국의 지방세 과세주체별·세원별 세수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주정부(state)						기초정부(local)					
	1995		2005		2014		1995		2005		2014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합계	406,511	100.0	686,044	100.0	885,769	100.0	270,695	100.0	485,336	100.0	636,089	100.0
소득과세	157,598	38.8	278,072	40.5	369,491	41.7	15,795	5.8	28,382	5.8	38,706	6.1
재산과세	14,494	3.6	16,993	2.5	18,502	2.1	197,342	72.9	345,840	71.3	449,784	70.7
소비과세	234,419	57.7	390,979	57.0	497,776	56.1	57,558	21.3	111,114	22.9	147,599	23.2
기타과세	0	-	0	-	0	0.1	0	-	0	-	0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2) 특징적인 세목

- 미국의 지방세 중 특이한 세목으로 관광세, 숙박세, 렌트카세, 보험(영업)세, 자동차등록부가세, 고속도로사용세, 오염세 등이 있음

[표 24] 미국의 특징적 세목 현황

세목		내용
관광·숙박세	관광세	- 유흥·오락장소의 유흥서비스, 관광서비스, 선박·스키 임대, 해당 장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음료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영업자에게 부과 - 과세표준은 해당 장소에의 입장료, 해당 음식·음료 판매 총수입 - 입장세(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흥세(Live Entertainment Tax; 네바다), 도박세(네바다)
	숙박세	- 호텔·콘도 등의 임대서비스, 캠핑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영업자에게 부과, 호텔 투숙에 대해서도 부과 - 과세표준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총수입 - 숙박세(하와이 등), 호텔숙박세(일리노이), 컨벤션센터 건립비 부가세(보스턴, 스프링필드 등)
렌트카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단기간 자동차 렌트 소비자에게 렌트카세를 주세(State Tax)로 부과하며, 지방정부에서 여기에 추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기도 함
보험(영업)세 (뉴욕주)		-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보험회사에게 부과 - 과세표준은 보험료(공제항목 제외) - 보복적 세금(Retaliatory Tax; 다른 주에서 영업을 하는 뉴욕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만큼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주의 보험회사에 부과)
자동차등록부가세 (뉴욕주)		광역시 구역에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과
고속도로사용세 (뉴욕주)		뉴욕 주의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트레일러에 대하여 트럭 운송업자 및 소유주에게 부과
오염세 (미네소타주)		-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산에 대하여 1995년부터 오염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누락을 보전 - 상업용/공업용 건축물,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등에 과세되고, 개인자산은 제외

자료: 하능식·임상수·이선영,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p.113; 김필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의 검토」, 지방세포럼 통권 제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p.7.



나. 독일

(1) 지방세 체계³⁸⁾

■ 독일의 조세는 연방세, 주세, 게마인데³⁹⁾세로 구분

- 하나의 세목의 세수가 여러 공법상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공동세)가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
- 주세에는 부동산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경매등세 및 복권세, 소방세, 맥주세 등이 있음
- 게마인데세에는 모든 게마인데에 공통적인 세목인 부동산세와 영업세가 있고, 그 외에 전세, 유흥장세, 제2주택세 등 다양한 세목이 존재
- 연방세, 주세, 공동세, 게마인데세 중 영업세와 부동산세 등에 대한 입법권은 연방하원에 있으나, 전세, 제2주택세처럼 게마인데가 독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존재

■ 주세

- 부동산취득세
 - 부동산 거래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수한 형태의 부가가치세로도 이해
 - 독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에 한정되고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 부분으로 별도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동산취득세법」에서는 타인 토지상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부동산으로 취급
 - 독일 역내에 있는 부동산 취득행위만이 과세대상으로 비과세 규정 존재
 - 2006년 9월 1일 연방헌법 개정으로 주가 부동산취득세율의 결정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법」에 규정된 세율(3.5%)과 관계없이 주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름
- 상속세와 증여세
 - 과세대상인 재산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발생한 부의 증가분으로서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임(평가기준에 관한 규정 존재)
 - 과세표준을 계산 시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상속세의 경우와 증여세의 경우에 있어서 공제금액이 기본적으로는 동일

38)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발췌·정리.

39) 게마인데(gemeinde): 독일의 행정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

- 상속·증여세율은 친인척도에 따른 과세등급(3단계)과 과세대상 취득재산의 가치(7단계)에 따라 7~50%
- 가업승계 후 7년간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등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규정이 있음
- 경매등세와 복권세
 - 거래세의 일종으로 자신의 소득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소득처분세로 분류
 - 경매등세에는 비과세항목이 없으나 복권세에는 존재
 - 경매등세의 과세표준은 내기에 투입한 금액이고, 세율은 5%
 - 복권세와 카드 등에 의한 사행행위에 대한 세금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명목 가치(세금은 제외)가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20%
- 맥주세
 - 맥주소비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이외에 추가 과세
 - 맥주세는 100g리터의 맥주 속에 내포된 맥주증원액의 농도(g)에 따라 결정되는데 맥주세 세율은 100리터 맥주에 대해 과세표준이 되는 농도가 되는 g마다 0.787유로
- 소방세
 - 거래세의 일종으로 소방활동과 화재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세로 운영
 - 과세대상은 화재예방을 위한 보험의 보험료 수령행위, 화재보험의 보험료
 - 과세표준은 화재보험의 유형에 따라 보험료의 14~40%, 기본세율은 19%

■ 게마인데세

- 게마인데는 조례로 독자적인 세목신설이 가능
- 게마인데의 세수입 중 공동세인 소득세와 고유세목인 영업세, 부동산세의 비중이 가장 큼
 - 이외에 세수가 미미한 견세, 유흥장세, 제2주택세, 사냥 및 낚시세, 음료수세, 주점허가세, 장기캠핑자에 대한 야영장세, 말의 보유에 대한 과세, 모터보트세 등이 있음
- 영업세
 -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존하는 영업(영업은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 최종적인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의 결정은 계마인테가 아니라 세무서가 함
- 영업세액은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영업세의 징수율은 계마인테가 조례를 통하여 결정
- 부동산세
 - 부동산세는 물세 성격으로 인적관계와 부동산 소유자의 급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
 - 과세대상은 계마인테 영역에 놓여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
 - 단위가치로부터 부동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가지 계산과정이 필요
 - 산출절차: 세무서가 단위가치에 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승수(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름)를 곱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계마인테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징수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세를 확정
-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을 보면, 연방정부는 33.5%에서 31.2%, 주정부는 22.3%에서 22.0%, 지방정부는 9.0%에서 8.2%로 감소

[표 25] 독일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단위: %)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정부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33.5	31.4	31.2	22.3	21.6	22.0	9.0	7.4	8.2	34.0	39.0	38.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과세는 11.1%에서 16.0%로, 기타과세는 2.9%에서 11.5%로 증가한 반면, 재산과세의 비중은 58.5%에서 45.3%로 감소
- 재산과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비과세, 소득과세, 기타과세 순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주정부의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과세는 51.9%에서 53.9%로, 재산과세는 6.1%에서 6.3%로 증가한 반면, 소비과세는 42.0%에서 39.8%로 감소
 - 소득과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비과세, 재산과세 순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정부의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과세와 기타과세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재산과세는 19.3%에서 14.5%로 감소하였고, 소비과세는 0.9%에서 5.9%로 증가
 - 소득과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순

[표 26] 독일의 지방세 과세주체별·세원별 세수입 추이

(단위: 백만유로, %)

	주정부						기초정부					
	1995		2005		2014		1995		2005		2014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합계	148,902	100.0	167,495	100.0	235,076	100.0	50,660	100.0	60,446	100.0	87,812	100.0
소득과세	77,258	51.9	83,503	49.9	126,797	53.9	40,295	79.5	46,725	77.3	69,747	79.4
재산과세	9,080	6.1	8,989	5.4	14,789	6.3	9,794	19.3	10,247	16.9	12,690	14.5
소비과세	62,564	42.0	75,007	44.8	93,490	39.7	448	0.9	3,395	5.6	5,203	5.9
기타과세	0	-	0	-	0	0.1	130	0.3	79	0.1	172	0.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2) 특징적인 세목

- 독일의 지방세 중 특이한 세목으로 견세, 유흥장세, 사냥 및 낚시세, 음료수세, 숙박세 등이 있음

[표 27] 독일의 특징적 세목 현황

세목	내용
견세	- 건공의 소유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 - 개에 의한 공공시설의 오염을 제거하는 비용에 대한 지역적인 지출세(Aufwandsteuer), 직접세 - 과세표준은 보유건의 마리수,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
유흥장세	- 유흥행사(댄스와 관련된 행사나 파티, 영화상영, 오락기계 등)에 대하여 주최·영업자에게 부과 -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목적세, 지역적지출세, 간접세 - 과세표준은 교부된 입장권의 가격과 매수 또는 판매총액
사냥 및 낚시세	- 사냥권의 행사(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존, 동물의 습득·사살 등)에 대하여 행사자(제3자를 통한 행사자 포함)에게 부과 - 과세표준은 연간수렵가치
음료수세	- 사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제공되는 모든 알콜함유 음료수에 대하여 제공하는자(영업자)에게 부과 - 과세표준은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장기캠핑장에 대한 야영장세	- 장기적으로 이동식주택·주거용자동차·캠핑카를 세워놓은 것에 대하여 장기캠핑자에게 부과 - 제2주택세의 대체 세금 성격 - 과세표준은 정기월세와 부가비용(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에 따라 결정
말의 보유에 대한 과세	- 승마용 말(취마용)을 보유·유지·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유자에게 부과 - 과세표준은 보유한 말의 숫자
숙박세	- 베를린과 함부르크가 숙박세를 부과 - 과세대상은 호텔, 유스호텔, 캠핑장 등과 같은 단기숙박업소 - 세율은 숙박비의 5%

자료: 하능식·임상수·이선영,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p.115; 김필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의 검토」, 지방세포럼 통권 제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p.7.

다. 프랑스

(1) 지방세 체계⁴⁰⁾

- 프랑스의 지방세는 주민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지역경제기여금, 오물수거세, 권리양도세, 석유생산세 등의 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지역경제기여금 등이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지방세의 세율은 통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로 결정되고 있으나 국가가 정한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세
 -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을 소유, 임대, 무상 등 어떠한 형태이든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
 - 처분권은 납세자가 해당 건물을 어느 때나 점유할 수 있고, 개인자격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
 - 해당 주택이 과세대상이면 임차인도 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대상 건물은 가구를 갖춘 거주지 및 부속건물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물건의 임대가치
 - 임대가치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1년간의 수입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금액
 - 임대가치는 지방의원과 납세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 위원회에서 결정
 - 부양가족공제, 선택적 일반 공제, 장애인 특별공제 등이 적용
 -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의 투표로 결정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세
 - 매년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
 -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수입으로 주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과세
 - 과세대상 물건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

40) 안창남,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발췌·정리.



- 토지건축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
- 기타 재산은 피난시설, 창고, 공장 굴뚝, 예술설치 작품, 거주용 선박, 지하 시설물, 작업장, 광고탑 등으로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건축물,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프랑스 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는 토지 등은 영구적 비과세 대상
-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대장(즉, 지적상 임대가치)」에서 임대가치의 50%를 공제한 금액
 - 과세대상 물건의 유지비, 보험,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을 감안
-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

- 매년 프랑스에 소재한 토지 중 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
- 과세대상 물건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
 - 특히 철로위의 토지, 경마장, 연못, 광산, 염전, 늪 등이 포함
 - 공공기관 소유 토지 중 국도, 지방도, 군도, 강 등은 영구적 비과세 대상인 반면, 나머지 토지는 공공성·공익성·비수익성이 있는 경우(예, 시민공원, 공동묘지)에만 비과세
-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임대가치에서 20%를 공제한 금액, 즉, 해당 토지 임대가치의 80%
- 세율은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꼬뮌⁴¹⁾에서 지방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

■ 지역경제기여금

- 2010년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기업 토지 부담금과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는 지역 경제기여금 제도 도입
- 기업 토지 부담금
 -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과세대상 사업은 정상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부동산 임대사업 또는 재임대사업도 포함)

41)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우리나라의 시·군과 유사.

- 과세표준은 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가치(산업용 토지의 임대가치는 30% 공제한 금액)
-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
 -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외형금액이 연간 152,500 유로 이상인 자
 - 과세표준은 산출된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 서울은 1.5%
-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는 51.2%에서 33.1%로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는 7.6%에서 13.0%로 증가

[표 28] 프랑스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단위: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51.2	42.3	33.1	7.6	11.0	13.0	40.6	46.3	53.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세원별 비중을 보면, 재산과세는 47.8%에서 51.8%로, 소비과세는 14.2%에서 23.5%로 증가한 반면, 기타과세는 37.9%에서 24.7%로 감소
- 재산과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타과세, 소비과세 순
- 소득과세 수입은 없거나 미미

[표 29] 프랑스의 지방세 세원별 세수입 추이

(단위: 백만유로, %)

	1995		2005		2014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합계	56,661	100.0	87,013	100.0	126,677	100.0
소득과세	0	-	0	-	16	0.0
재산과세	27,105	47.8	44,534	51.2	65,571	51.8
소비과세	8,056	14.2	14,708	16.9	29,804	23.5
기타과세	21,500	37.9	27,771	31.9	31,286	24.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2) 특징적인 세목

- 프랑스의 지방세 중 특이한 세목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에 추가되는 부가세, 기업 토지 부담금 부가세, 청소세, 공가세, 여행세 등이 있음

[표 30] 프랑스의 특징적 세목 현황

세목	내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세에 추가되는 부가세	- 건축물이 없는 토지세에 부가하여 징수 - 데파르트망의 농업회의소의 운영 경비를 충당
기업 토지 부담금 부가세	- 기업 토지 부담금(CFE) 및 기업 부가가치 부담금에 부가하여 징수 - 상업 및 산업 회의소 경비를 충당
청소세	도로 연변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
공가(空家)세	공가(거주기간 30일 이내로 2년 이상 빈 집인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 용의권자, 재임대자, 장기임차인에게 부과
여행세	-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부과 - 파리는 숙박업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10%의 데파르트망세가 부과

주: 데파르트망세는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세에 해당함.

자료: 하능식·임상수·이선영,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p.116; 김필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의 검토」, 지방세포럼 통권 제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p.6.

라. 일본

(1) 지방세 체계⁴²⁾

- 일본의 지방세는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구분되는데 도부현세 중에서는 도부현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 등의 비중이 크고, 시정촌세 중에서는 시정촌민세와 고정자산세의 비중이 큼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헌법을 기초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에 의거 행사
 - 도부현세는 광역자치단체세로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세에 해당하고, 시정촌세는 기초자치단체세로서 시군세에 해당

42)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발췌·정리.

■ 주민세

- 주민세는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로 구성되고, 주민에는 법인도 포함
- 개인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정촌(도도부현)내에 주소를 둔 개인, 시정촌(도도부현)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부지가 있는 개인으로 이들 사업소 또는 가옥부지가 있는 시정촌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자
- 시정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도도부현이므로 시정촌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도부현민세의 납세의무자
 - 개인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는 시정촌이 도부현민세도 포함하여 일괄 처리
 - 주민세는 당해년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자가 주소지의 시정촌에 납세할 의무
 - 일반사업소득자의 경우 시정촌으로부터 교부되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6월, 8월, 10월, 다음해 1월, 총 4회로 나누어 납부
-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전년도 소득금액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세액을 산출
- 개인주민세는 균등할 및 소득할로 나누어 부과
 - 표준세율: 도부현민세 균등할 1,000엔, 소득할 4%, 시정촌민세 균등할, 3,000엔, 소득할 6%
 - 도부현과 시정촌은 표준세율 균등할에 추가 부과 가능

■ 사업세

- 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로 구성
- 개인사업세
 - 과세표준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중 전년 중에 벌어들인 소득(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 계산의 예에 따라 산정)
 - 개인사업은 제1종사업, 제2종사업, 제3종사업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표준세율은 5%, 4%, 5%
 - 개인사업세의 과세주체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거주)지 중에 사업과 관련이 깊은 곳을 사무소로 간주
 - 사업세에는 청색신고특별공제⁴³⁾가 적용되지 않으나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세 독자적으로 연간 290만엔의 사업주공제가 마련

43) 청색신고특별공제: 납세자 스스로가 청색신고용지에 사업세를 신고하는 제도로 청색신고자는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아 세액을 경감 받음.



- 도도부현으로부터 교부되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납부
- 법인사업세
 -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법인이 하는 모든 사업이 과세대상이나 임업, 광물의 채굴사업, 특정농사조합법인이 행하는 농업 등은 제외
 - 과세표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생명보험사업 및 손해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그 외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원칙적으로 국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소득)
 -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외형(법인이익이 아닌, 예컨대 자본금이나 부가가치 규모)기준을 4분의 1로 하는 외형표준과세제도가 적용(법인의 부가가치나 자본금의 규모도 반영하여 세율이 결정되고, 소득금액에 따라서는 3.8%, 5.5%, 7.2% 차등세율이 적용)
 - 외형표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 따라 5%, 7.3%, 9.6%의 누진세율이 적용
 - 납세의무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세액을 납부

■ 지방소비세

- 국내거래와 수입거래 모두에 과세
 - 국내거래에 과세 되는 것: 양도할
 - 수입거래에 과세 되는 것: 화물할
- 납세의무자
 - 양도할의 경우 과세자산을 양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 화물할의 경우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 과세단체
 - 양도할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법인은 본점 등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부과
 - 화물할의 경우 과세화물이 인수되는 보세지역 소재의 도도부현이 부과
- 과세표준은 국세 소비세액
 - 양도할의 경우 과세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소비세액으로부터 매입과 관련된 소비세액을 공제한 후의 소비세액
 - 화물할의 경우 과세화물과 관련된 소비세액
- 세율은 국세 소비세액의 25%

- 신고·납부
 - 양도할의 경우 국세 소비세와 함께 세무서가 신고·납부
 - 화물할의 경우 국세 소비세와 함께 세관이 신고·납부
- 자치단체 간 지방소비세 조정
 - 도도부현 간의 청산: 각 도도부현에 납부된 지방소비세수를 「각 도도부현별 소비에 상당하는 금액」⁴⁴⁾에 따라 청산
 - 시정촌예의 교부: 도도부현 간의 청산 후 금액 2분의 1 상당액을 「인구·종업 원수」로 안분하여 시정촌에 교부

■ 고정자산세

- 일본의 대표적인 자산(재산)과세로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과 그 부담과의 대응이라는 응익원리를 구현하는 보유자산과세
-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고정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개인 또는 법인이 부과기일 전에 사망 또는 소멸한 경우 부과기일 당시의 해당 고정자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의 특례가 존재
- 과세대상은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
- 과세표준은 해당지역에 위치하는 고정자산의 가격(지가공시가격의 70%)
 -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 시 기준년도(3년마다 바뀜)에 평가를 하여 조정을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3년간 그 조정된 가격을 사용
 - 과세표준액이 토지 30만엔, 가옥 20만엔, 상각자산 15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을 설정
 - 양질의 주택건설촉진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용지나 신축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조정이나 세액의 경감조치를 설치
- 인적비과세와 물적비과세 등의 비과세제도가 존재
 - 인적비과세: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등 공적 성격에 따른 비과세
 - 물적비과세: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등이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묘지, 공공의 도로, 운하용지 및 수도용지 등 용도와 관련된 비과세

44) 각 도도부현별 소비에 상당하는 금액: 상업통계에 기초한 소매연간판매액과 서비스업기본조사에 기초한 '서비스업 중 개인사업수입액'을 합산한 금액(8분의 6의 비중), 국세조사에 기초한 인구(8분의 1의 비중), 사업소기업통계에 기초한 종업원수(8분의 1의 비중)를 이용하여 산출.



- 서울은 표준세율 1.4%, 탄력세율(제한세율) 2.1%
 -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이 고정자산의 가치에 따라 매년 1월1일 부과하는데 4월, 7월, 12월, 다음해 2월, 총 4회 나누어 납부
-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는 45.4%에서 36.9%, 지방정부는 25.6%에서 23.5%로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29.0%에서 39.7%로 증가

[표 31] 일본의 과세주체별 조세 비중 현황

(단위: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1975	1995	2014
일본	45.4	41.2	36.9	25.6	25.3	23.5	29.0	33.5	39.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과세는 52.7%에서 51.5%, 재산과세는 31.6%에서 23.2%로 감소한 반면, 소비과세는 14.7%에서 19.2%로 증가
- 소득과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과세 순

[표 32] 일본의 지방세 세원별 세수입 추이

(단위: 십억엔 %)

	1995		2005		2014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세수입	비중
합계	33,675	100.0	34,804	100.0	36,786	100.0
소득과세	17,752	52.7	16,655	47.9	18,940	51.5
재산과세	10,653	31.6	10,593	30.4	10,388	28.2
소비과세	4,941	14.7	7,206	20.7	7,059	19.2
기타과세	329	1.0	351	1.0	399	1.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2) 특징적인 세목

- 일본의 지방세 중 특이한 세목으로 자동차중량세, 항공기연료세, 전원개발촉진세, 석유석탄세, 숙박세, 낚시세 등이 있음

[표 33] 일본의 특징적 세목 현황

세목	내용
자동차중량세	-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는 자동차와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는 경자동차에 대하여 교부·지정을 받는 자에게 부과 - 과세표준은 자동차 중량
항공기연료세	- 항공기에 적재하는 항공기 연료(발동기 정비·시운전을 위한 연료, 항공기 조립 전에 사용한 연료 포함)에 대하여 항공기 소유자·사용자에게 부과 - 공항정비재원에 충당(중앙 일반재원)하거나 공항관계 시정촌 및 도도부현의 공항대책비로써 양여
전원개발촉진세	- 사무소·사업소에 공급하는 판매전기(일반전기사업자가 자가소비한 전기 포함)에 대하여 일반전기사업자에게 부과 - 전원입지대책 및 전원이용대책에 충당
석유석탄세	- 원유, 석유제품,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및 석탄에 대하여 채취자(채취장으로부터 반출)·인수자(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에게 부과 - 석유 및 에너지 수급구조고도화대책에 충당(중앙 일반재원)
숙박세	- 2002년부터 법정외세로 운영 - 납세자는 도교도 내에 여관이나 호텔에 숙박하는 사람이며, 호텔 또는 여관 운영자가 숙박세를 징수하여 납입
낚시세	- 아마시나현의 경우 법정외세로서 유어세를 과세하는데 낚시로 인한 환경문제에 기인 - 1명 1일 기준으로 200엔인 유어세권을 발행해 징수

자료: 하능식·임상수·이선영,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p.117; 김필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의 검토」, 지방세포럼 통권 제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p.10.



3. 우리나라의 지방세 관련 주요 논의 사항

가. 지방세 세수확충

-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24.6% 수준에 불과하나 2016년 통합재정 기준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이전재원, 교육재정 포함)의 사용액 비율⁴⁵⁾은 52.9:47.1
-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 사회복지 지출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
- 이런 이유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의 세수확충 방안이 제기

(1) 국세의 지방세 이양⁴⁶⁾

- 지역정착성이 강하여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분 개별소비세 등이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국세로 논의되고 있음

(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이양

- 부동산 관련 세제의 일원화와 효율화 측면에서 지방세로 이양 필요 주장 제기
 - 부동산의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매도(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으로 일원화
 - 건축물·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문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세원포착 및 관리의 효율 제고 가능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표 단일화가 가능하여 부동산의 거래사실 확인이 용이하고, 부과징수의 정확성과 효율성 도모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지목변경 등 부동산 관련정보를 납세자에게 사전 고

45)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 p.119.

46) 하능식 · 김재훈 · 주만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 지방세연구원, 2015. 발췌·정리.

지함으로써 납세편의제고 가능

- 양도소득은 지역의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지방자치 이념 구현 측면에서 바람직

■ 대도시 집중화와 중앙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수단 상실 측면에서 지방세로 이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부동산 관련 개발이익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세수편중 문제 해결방안 강구 필요
- 부동산 정책 수행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가 어려울 경우 정책갈등, 지방에 대한 과세자주권 침해 우려 존재
 - 하능식(2015)은 양도소득세는 정책세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책세제보다는 재정수입 목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주장

(나) 특정장소 입장분 개별소비세 이양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장 등의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이용 포함)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부과⁴⁷⁾

■ 특정장소 입장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⁴⁸⁾

- 대부분의 특별 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음
 - 골프장, 투전기, 카지노 시설장소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증가되고 있고, 경마, 경정 및 경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음

47)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 · 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관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인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48) 유태현,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수많은 과세대상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세원 포착이 용이하지 않아 국세청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장소에 대하여 개발단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지켜볼 수 있는 근접성을 가지므로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 경마, 경정, 경륜의 경우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레저세가 부과되어 납세협력비용이 각각 발생하고, 세무행정력이 각각 투입되고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력의 절감을 위해서 필요
 - 이에 반해 김재훈(2015)은 동일한 세무자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레저세(매출액 기준)와 경마 등의 개별소비세(입장객수 기준)는 관련 자료가 다르므로 세무행정력 절감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
 - 안종석(2015)⁴⁹⁾은 특정장소 입장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국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음식·숙박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성격의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
- 특정장소 입장분 특별소비세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징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단체별 세수편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로의 이양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
- 김재훈(2015)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특정장소 입장분 특별소비세의 세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로의 이양이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느 정도의 재정력 격차는 불가피하고, 특정장소 입장분 특별소비세보다 세수가 더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 세목들이 있으며, 특정장소 입장분 특별소비세수의 불균등도가 전체 지방세 수입보다 균등

49) 안종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p.160.



(2)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⁵⁰⁾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주로 「지방세법」(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에 의해 시행
 - 2015년 기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규모는 6조 8,256억원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규모는 5조 5,605억원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으로는 최소납부세제 개선, 일몰도래 지방세 감면 조항 정비 등이 논의
- 최소납부세제 개선
 -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이 100%인 경우라도 85%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하는 제도로써 2015년부터 도입
 - 200만원 이하의 취득세와 5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적용이 배제
 - 농업법인, 농협·수협,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도 적용이 배제
 - 취득세, 재산세의 면세기준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조세회피 유인을 제공하므로 합산과세하거나 폐지할 필요
 - 소재의 부동산을 여러 건 취득·보유한 납세자와 고액 부동산을 1건 보유한 납세자 사이에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
 - 면세기준은 지분 쪼개기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문제 발생
 -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 선정에 엄격한 담세력 기준평가 필요
 - 배제대상이 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조건을 엄격히 적용 필요
 - 현재 배제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농협·수협, 종교단체 등은 담세력이 인정
- 일몰도래 지방세 감면 조항 정비
 - 2017년 일몰도래 항목은 총 20개 조문이고, 2015년 기준 감면액은 3,949억원임
 - 일몰도래 주요항목은 유형별로 농업부문, 중소기업 등 입지지원 부문, 공사·공단부문, 사회복지부문 등으로 구분
 - 세부내역별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50) 이선화, 「효과적 지방세 감면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4.; 이선화, 「지방세 감면정비 현황과 제도개선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3. 등 참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

- 이선화(2017)는 농업부문을 제외한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에 감면정비가 진행된 유사 부문과 형평성을 조율하는 차원의 정비가 요구되고,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와 함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
 -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통부문 사업은 일반 소매유통업체와 차별성이 거의 없으므로 감면종료 필요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하는 등 부정운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방세 감면요건 완료확인서’ 제도의 도입 필요

(3) 신세원 발굴

-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세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사회복지세 신설, 핵연료세 신설 등 신규 세원의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있음

(가)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⁵¹⁾
- 석유류·천연가스 제조시설, 매립폐기물 시설, 해저자원, 시멘트생산시설, 조력 발전, 방사성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

5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표 34]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관련 법률안 및 위원회 검토보고 내용

과세대상	발의의원	내용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김태흠 의원 (2016. 7.18.)	- (이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에서 제외 - (찬성) 해당 시설은 악취·환경오염·안전사고 우려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 외부효과의 내부화⁵²⁾ 측면에서 인정 - (반대) 해당 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 여부 불분명,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중복, 저장시설 중 정부관리 자원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 납세의무자의 부담 초래, 주변지역 지원금 제도와의 중복 등에 문제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	박남춘 의원 (2016. 7.18.)	- (이유)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로 인하여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심리적인 불안감, 분진·악취 등 주민 고충 증가 - (찬성) 해당 시설은 분진·악취·대기오염·안전사고 우려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 외부효과의 내부화 측면에서 인정 - (반대) 폐기물 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과의 중복, 납세의무자의 부담 초래,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이중과세 등 문제, 천연가스 제조시설의 경우 주변지역 지원금 제도와의 중복, 가스요금 인상 등에 문제
해저자원	박명재 의원, 정갑윤 의원 (2016. 7.20.)	- (이유) 해저자원의 경우 과세목적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음 - (찬성) 탐사권자는 해저자원 개발을 위해 해역을 점유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누리고, 광구 주변 어로제한이나 환경훼손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유발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 외부효과의 내부화 측면에서 인정 - (반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지자체 관할이 아니라는 점, 민간기업의 대륙붕 개발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해저자원의 인입시설에 이미 과세되고 있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점 등
시멘트 생산시설	이철규 의원 (2016. 9.29.)	- (이유) 시멘트 생산·수송과정의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과세되지 않음 - (찬성) 시멘트 생산은 인근 주민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점, 석회석에 대한 과세와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화석연료에 별도 과세하고 있는 점 등 - (반대) 대규모 시설투자로 비산먼지 등에 대해 법적 규제치 이하로 관리하여 생산하고 있는 점,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이미 과세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멘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

52) 세금으로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제3자에게 초래



과세대상	발의의원	내용
조력발전	박순자 의원 (2016. 11.8.)	- (이유) 조력발전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파괴와 갯벌에서 채취되는 어지의 급감으로 지역어민들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부과를 통한 이익환원기능이 있어야 함 - (찬성) 조력발전소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갑문 안쪽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과세되는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용수와 조력발전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점 등 - (반대) 시화호 조력발전은 성공적인 환경개선 사례로 과세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점 등
발전소내 저장하는 방사성 폐기물	강석호 의원 (2016. 11.30.)	- (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처리시설의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방사능 누출 등의 잠재적 위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사업 등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 확보 필요 - (찬성) 방사능 누출 위험으로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외부효과의 내부화 측면에서 인정 - (반대) 원자력발전에 이미 과세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의 보관은 원전운영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사회복지세⁵³⁾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세 제정법률안이 2013년 발의된 바 있음⁵⁴⁾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부가하여 사회복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용

■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음

- 찬성의견
 -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⁵⁵⁾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

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하기 때문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53) 기획재정위원회, 「사회복지세법안 검토보고서」, 2013. 12. 발췌·정리.

54) 사회복지세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2013.6.27.).

55) 사회복지관련 정부지출, 사회보험 급여 등 공공사회복지지출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16.1% 증가.

-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 지출⁵⁶⁾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반대의견**
 - 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지출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연관관계가 불분명하고, 사회복지세를 통해 복지재원이 증가하더라도 정부가 기존 복지사업의 세출을 조정할 여지
 -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배치
 - 근로·투자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 증세는 신중할 필요

(다) 핵연료세⁵⁷⁾

-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핵연료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0월 20일(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 핵연료세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음
 - **찬성의견**
 - 석유·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의 핵연료에는 과세되고 있지 않으므로 에너지원 간 과세형평성 제고
 -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및 심리적 불안감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유발되므로 핵연료세를 통하여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기여
 - **반대의견**
 -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핵연료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과세목적 및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
 - 발전원가의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세 부담이 납세의무자에서 전기사용자로 전가될 가능성
 - 원자력발전소는 타 발전원보다 높은 수준의 각종 부담금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저해

56) 2007년 2.8조원에서 2012년 7.4조원으로 연 평균 21.5% 증가.

57)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01. 발제·정리.



나. 주요 세목별 논의 사항⁵⁸⁾

(1) 취득세

■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체계를 단일 비례세율로 전환 검토 논의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 9억 초과 3.0%의 누진세율체계
- 6억원, 9억원 등의 과세구간에서 조세부담이 큰 폭 증가하므로 납세자가 거래 가격을 조정하는 유인 제공

(2) 지방소득세

■ 누진세율체계의 비례세율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로 누진세율체계
- 전통적인 세원배분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자원배분 기능만을 담당하고, 소득재분배, 경기안정화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므로 지방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누진세율체계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
 - 다만, 제2세대 세원배분이론은 지방정부가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견해 존재
- 누진세율체계의 적용은 지방세 과세근거인 응징과세 성격을 약화시키고, 고 소득자 및 대형법인이 많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의 확대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⁵⁹⁾

- 지역간 세율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역간 기업의 이동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안중석, 김용민)
- 공동세 방식은 지방교부세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법인세를 지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배분기준이 달라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이 축소된다는 견해(안택순)

5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 2016, pp.29~52. 발췌·정리.

59)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6.10. 발췌·정리.

- 공동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주의에 위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배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전동훈)

(3) 재산세

■ 세부담상한제 축소 논의

-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일부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 인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
 - 현재 세부담상한율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 다만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 세부담상한제는 주택공시가격과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액 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4) 자동차세

■ 주행분 자동차세 정상화 논의

- 주행분 자동차세수의 70% 정도를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
 - 유가보조금제도는 경유 및 LPG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버스, 택시 화물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주행분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비중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

(5)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에 관한 논란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는 방식으로 2010년 도입된 후 2014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⁶⁰⁾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6%p 인상되어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임

60) 정부는 2014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4%에서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 9억원 초과 3.0%로 인하.



-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정부는 3년 후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 이양하여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계획⁶¹⁾이었음
-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 해결에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 세입원 축소,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재원증가, 지자체 책임성 약화 등이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⁶²⁾
- 지방소비세는 순수 지방세도 아니고 정책목표가 뚜렷한 이전재원도 아니지만 배분 형태가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지방소비세 제도가 안정적인 재정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⁶³⁾
 - 일본의 경우 2012년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모두 복지지출로만 충당하기로 결정
 - 우리나라도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향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교육, 복지 등 중요한 재정지출 소요에 동일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6) 담배소비세

■ 담배가격 인상

- 담배에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이 부과되는데 그 중 담배소비세는 1988년 신설된 후 세율이 2006년 이후 641원(제1종 켈런 20개비 기준)에서 2014년 12월 23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1,007원으로 인상
 - 큰 폭(57.1%)의 담배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징수액은 3조 350억원으로 2014년 대비 2.8%(822억원) 소득증가에 그침

61)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12, pp.26~27.

62)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2012. 9, pp.143~144.

63) 한국개발연구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과위원회, 2013.12, pp.38~39.



[표 35]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

(단위: 억원, %)

2013	2014년			2015		
징수액(A)	징수액(B)	증감액(B-A)	증감률	징수액(C)	증감액(C-B)	증감률
27,824	29,528	1,704	6.1	30,350	822	2.8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 1종 궤련 기준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가격을 인상(80% 인상)함에 따라 국세, 부담금 등은 갑당 588원에서 1,868원으로 64.0%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962원에서 1,450원으로 24.4% 수준의 증가에 그침
 - 담배가격에서 국세(부담금 포함) : 지방세 비중이 가격 인상 전 23.5% : 38.5%에서 인상 후 41.5% : 24.4%로 지방세 비중 하락

[표 36]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및 부담금 변경 사항

(단위: 원, %)

		인상 전	인상 후	증감	증감률
판매가격		2,500	4,500	2,000	80.0
국세, 부담금 등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	841	487	137.6
	폐기물부담금	7	24	17	242.9
	부가가치세	227	409	182	80.2
	개별소비세	-	594	594	순증
	소계	588	1,868	1,280	217.7
	비율	23.5	41.5	64.0	-
지방세	담배소비세	641	1,007	366	57.1
	지방교육세	321	443	122	38.0
	소계	962	1,450	488	50.7
	비율	38.5	32.2	24.4	-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950	1,182	232	24.4

주: 제1종 궤련 20개비 기준임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 2016, p.35 재구성



참고문헌



-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
- _____,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2012. 9.
- 김재훈, 「기반형성기의 지방세제: 1961년~1976년」, 「2015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 김태호, 「2016 지방세개론」, 세연T&A, 2016.
- 김필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의 검토」, 지방세포럼 통권 제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 김현아,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한국세제사」 제2편제3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박광현, 「지방세 이해와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 박훈, 「미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서울특별시, 「2017 알기쉬운 지방세」, 2017.
- 손희준, 「태동기(1948년~1960년) 지방세제의 특징과 의의」, 「2015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 안중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 안창남,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유태현,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지방세포럼 통권 제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11.
- _____,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 이선화, 「효과적 지방세 감면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4.
- _____, 「지방세 감면정비 현황과 제도개선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3.

- 하능식·김재훈·주만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하능식·임상수·이선영,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 한국개발연구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과위원회, 2013.12.
-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대외 세미나, 2016.10.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 2016.
-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 _____, 「지방자치 20년 평가」, 2015.
- _____,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17.
- 홍기용, 「지방세법」, 삼일인포마인, 2016.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7 지방세

발간일	2017년 6월 1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원양산업(주) (tel 02 · 2263 · 926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8)

ISBN 978-89-6073-999-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